

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3.12.23		16		
2	2016.1.12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 라 한다) 조종실기교수 인사위원회(이하 ‘인사위원회’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비행교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항공운항학과장으로 5인(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)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 (단, 필요시 2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)

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조 (위원장 및 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,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의결)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심의사항)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종실기교수의 신규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
2. 조종실기교수의 승진 및 기간제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
3. 기타 조종실기교수의 신분에 관한 주요사항

제6조 (회의록 및 간사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기획총괄팀장으로 보한다.

<개정2013.12.23.,2016.1.12.>

제7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